

2019학년도

학교운영위원회 자체연수



흥덕중학교

01 학교운영위원회 개요

01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

-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
 - 학부모·교원·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
-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
 - 학교내외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
 - 학부모, 교원,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
 -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
 - 학교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·자문하는 자치기구
 - 학교운영의 민주성, 합리성, 투명성 확보
 -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
 - 학교 규모, 학교 환경 등 개별학교 실정 고려
 - 단위학교별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

02 학교운영위원회 도입배경 및 연혁

● 학교운영위원회 도입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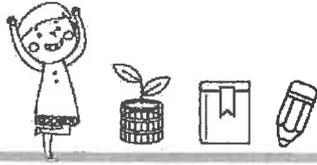
-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
- 학생·교원·학부모·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반영
- 수요자 중심 교육 실현

● 학교운영위원회 연혁

- 2000~현재 법정 심의(자문)기구로 정착
- 1999 사립학교까지 설치 의무화
- 1996 국·공립학교에 설치 의무화
- 1995 학교운영위원회시범운영(355개교)
- 1991 지방교육자치제도 실시

03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

초·중등교육법	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	학교운영위원회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	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, 기능 -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-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선출방법 -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,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, 의견수렴, 심의결과의 시행 - 소위원회 설치, 시정명령 - 학칙 또는 조례 등에 위임 근거 - 학교발전기금 조성·운용 및 회계관리 등 -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근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, 임기, 자격, 의무, 운영 방법 등 - 심의사항, 회의 소집, 안건의 제출 - 회의공개 및 회의록 관련사항, 소위원회설치 - 유치원운영위원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·구성 비율, 자생조직과의 관계 - 소위원회 운영방법·절차 - 그 밖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


04 국·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비교

◎ 성격

국·공립학교	사립학교
심의기구	자문기구

-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(국·공립학교) / 자문 기구(사립학교)이므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
- 국·공립학교장은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보고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에 비해 국·공립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의 실질적 구속력이 강함
- 다만, 사립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

◎ 심의 및 자문 사항

구분	국·공립학교(심의)	사립학교(자문)
교육과정 운영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교육과정 운영 •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•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 • 학교운동부 구성·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교육과정 운영 •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•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 • 학교운동부 구성·운영
학교행정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•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• 학교헌장 및 학칙 제·개정 • 공모교장의 공모방법, 임용, 평가 등 • 초빙교원의 추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•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※ 학교헌장 및 학칙 제·개정은 학교 법인의 요청시 자문 ※ 공모교장 및 초빙교원은 제외
학부모 부담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•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 •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•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 •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
※ 학교발전기금 조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·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모두 심의 의결함

◎ 위원선출방법

구분	국·공립학교	사립학교
학부모위원	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(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)	
교원위원	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	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
지역위원	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	

0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



01 위원 구분

구분	내용
학부모위원	•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
교원위원	•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
지역위원	•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※ 예산·회계·감사·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,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,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

02 역할

구분	내용
위원장	•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자 •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, 정기회·임시회 소집공고, 의사일정 작성·변경,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회부, 집행부서의 심의의안 이송
부위원장	• 위원장 유고시 직무 대행
운영위원	•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
간사	•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, 개최, 심의, 회의기록 등 운영위원회의 제반사무 처리

03 소위원회

구분	내용
개념	• 사전 조사,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학운위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 • 필요시 일반 학부모, 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
종류	• 필수 설치 : 학교급식소위원회, 예·결산소위원회 • 필요시 설치 : 교육과정소위원회 등 ※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학교는 학칙, 공립학교는 조례로 정함
운영방법	• 상임위원회 : 학교급식 등 중요분야에 대해 미리 소위원회 구성 • 임시위원회 : - 안건 접수후 본회의 전 위원장이 임의로 구성하는 경우 -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구성하는 경우

※ 소위원회와 본회의와의 관계

- 소위원회에 본회의 권한 위임 불가, 소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이유로 본회의 대체 불가

04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및 구성비율

☞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)

학생 수	위원 수
200명 미만	5~8명
200명이상 1천명 미만	9~12명
1천명 이상	13~15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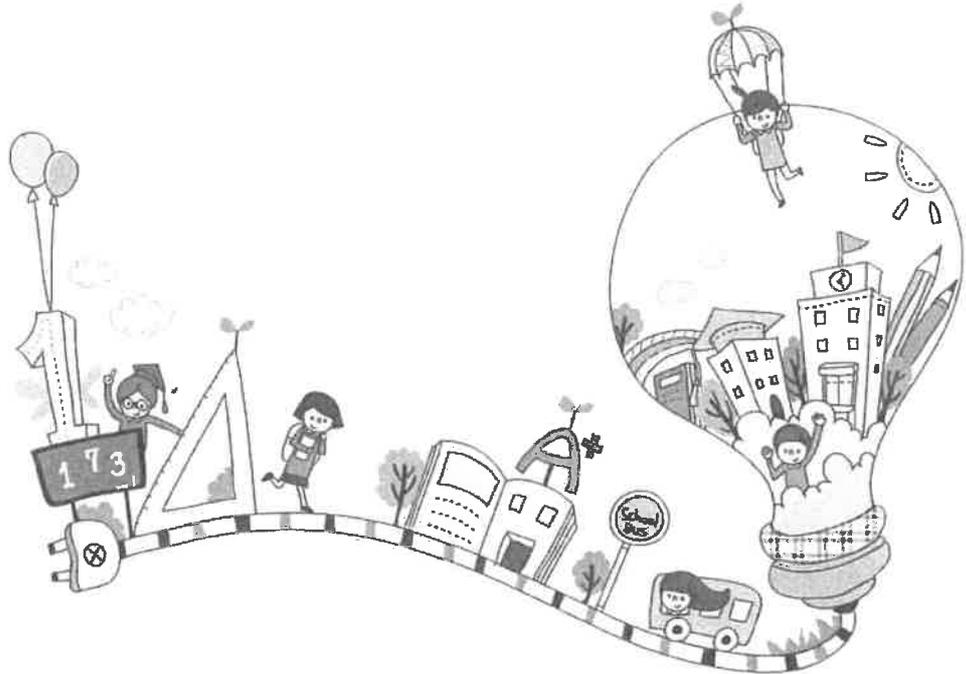
•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

☞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)

구분	일반학교	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
학부모위원	40~50%	30~40%
교원위원	30~40%	20~30%
지역위원	10~30%	30~50%

※ 표의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

※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는 국립학교는 학칙, 공립학교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, 학부모, 교원, 지역위원은 각 1명 이상 포함



03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

0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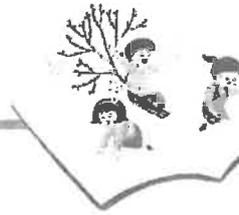
- 임기
 -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 : 2년, 한 차례만 연임 가능
 - 지역위원 : 2년,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 가능
- 임기 개시일 : 4월 1일
- 보궐위원의 임기 : 전임자의 남은 기간
-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: 1년, 연임 가능

0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

구분	내용
학교운영 참여권	•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제안·건의
중요사항 심의·자문권	•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자문
보고 요구권	•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, 심의·자문 사항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
시정명령 요구권	•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, 심의·자문 사항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 가능

0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

구분	내용
회의 참여의 의무	•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 ※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 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격 상실
지위남용 금지의 의무	•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알선 금지 ※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 상실



0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바람직한 자세

-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
-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

구분	내용
학부모위원	• 일반 학부모의 의견과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
교원위원	•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들 의견수렴
지역위원	•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

- 학부모위원, 지역위원 및 교원위원 간 상호 이해
-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 준수
-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
-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 사항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 신장
- 학교운영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

